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3
----------	------

발의연월일 : 2016. 8. 24.

발의자 : 정춘숙 · 권미혁 · 윤종오
김성수 · 정성호 · 박용진
민병두 · 박남춘 · 전혜숙
황주홍 · 소병훈 · 진선미
최도자 · 김해영 · 강훈식
김삼화 · 심상정 · 김종훈
남인순 · 강병원 · 박경미
정동영 의원(2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1990년대 말 가정폭력이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변화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및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각종 의료·법률 지원 체계 정비 등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왔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가정폭력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 역시 계속 양산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갈수록 흉악해지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많은 실정임.

또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한바,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와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며,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결여되어 있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금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확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가정폭력 행위자를 가정폭력가해자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2호, 제6조제3호, 제7조의3제1항제2호, 제9조의4제3항 및 제6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8호 신설).

라. 국가는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

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안 제4조의8 신설).

마. 외국인 상담소와 장애인 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바.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사. 피해자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1항제4호의2 신설).

아.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입소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자. 보호시설의 업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삭제).

차. 피해자등의 개인정보 및 신변 보호를 위해 비밀 엄수 의무자를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경찰 및 공무원 관계자로 확대함(안 제16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제4항 삭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①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정폭력 예방활동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제2호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가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접적으로 피해를”을 “피해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해야”로 한다.

8.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제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8(이혼 중인 피해자 보호 등) ① 국가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한 피해자가 부부상담 또는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가해자(친권자를 포함한다)의 면접교섭권을 직접 법원에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상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상담소 및 장애인상담소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3호 중 “행위자에”를 “가정폭력가해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제1항제2호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가해자가”로 한다.

제7조의5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자립지원금

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피해자 생활보호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에게는 입소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 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상담원 등 종사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피해자나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 등 종사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증언하는 경우

(「가사소송법」에 의한 법원 출석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동행한 관찰 경찰관서의 소속 직원은 피해자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의4제3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는”을 “가정폭력가해자는”으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한 직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긴급전화센터 등과 의료 및 법률 등 피해자가 보호·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제공하고, 피해자 요청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누설하여서는”을 “가정폭력가해자(친권자를 포함한다)에게 누설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영유아보육법」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피해자 등의 보육·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및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3.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등 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4. 「경찰공무원법」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피해자에 대한 가출 및 실종수사 등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 및 사법경찰관

리

5.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6. 「변호사법」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加害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거나 했던 법률 관계자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한다”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를 “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 비용의 지원범위·지원절차 등에”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를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4조의5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약) 2. “<u>가정폭력행위자</u>”란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u>피해자</u>”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u>직접적으로</u>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p>제1조의2(기본이념) ① 가정폭력 <u>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u></p> <p>②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는 가정폭력 예방활동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가정폭력가해자</u>-- ----- ----- -----. 3. ----- -----<u>피해를</u>----- ---.

4. (생 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신 설>
4.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u>	② ----- -----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해야-----.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8(이혼 중인 피해자 보호 등) ① 국가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한 피해자가 부부상담 또는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가해자(친권자를 포함한다)의 면접교섭권을 직접 법원에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상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이유

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자립지원금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6(피해자 생활보호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에게는 입소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

-----.

<신 설>

<신 설>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 ② (생략)
③ 가정폭력 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증언하는 경우(「가사소송법」에 의한 법원 출석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동행한 관찰경찰관서의 소속 직원은 피해자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가정폭력가해자는-----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한 직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긴급전화센터 등과 의료 및 법률 등 피해자가 보호·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내용을 포함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상담원
을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안내문을 제공하고, 피해자 요
청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6) _____

----- 가정폭 -----
력가해자로부터 -----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가정폭력가해자(친권자를
포함한다)에게 누설하여서는---

1.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
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영유아보육법」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피해자 등
의 보육·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및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8조(치료보호) ① (생략)

②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3.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등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4. 「경찰공무원법」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피해자에 대한 가출 및 실종수사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계자 및 사법경찰관리

5.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6. 「변호사법」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거나 했던 법률관계자

제18조(치료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⑤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行使)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 비용의 지원범위·지원절차 등에-----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p><u>다.</u></p> <p>제20조(벌 칙) <신 설></p> <p>(생 략)</p> <p>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 ③ (생 략)</p>	<p>제20조(벌 칙) ① 제4조의5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제22조(과태료) <삭 제></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